

# 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9
----------	---

제출년월일 : 2014. 7.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1. 제안이유

가. 「기초연금법」이 제정(법률 제12617호)되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부담액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에 대한 시 부담비율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인천광역시가 100분의 60을 부담함.  
(안 제2조)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비율) 인천광역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금 100분의 60을 부담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p>□ 기초연금법</p> <p>○ 제25조(비용의 분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상호 분담한다. 이 경우,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의 조례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 비용 추계서

## 1. 비용발생요인

- 「기초연금법」 제25조(비용의 부담)
-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 2.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3. 비용추계

- 지급대상 : 65세 이상 노인의 70%
-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매년 9월 복지부장관이 고시) 이하의 노인
- 지급액 : 월 100,000원 ~ 200,000원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원]
- 2014년도 예산액 : 327,137백만원 (국비 234,552/시비55,551/군구비37,034)

## 4.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 5. 참고사항

- 타 광역시 부담비율(안) 현황 (※ 현재 부담비율 결정 진행안)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부담비율(%)	50	70	60	60	60	50

## 6. 작 성 자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장 유지상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입	기초(노령)연금	234,552,000	351,840,000	368,569,000	386,319,000	406,059,000	1,747,339,000
	소계	234,552,000	351,840,000	368,569,000	386,319,000	406,059,000	1,747,339,000
세출	기초(노령)연금	327,137,000	493,672,000	517,144,000	542,050,000	569,748,000	2,449,751,000
	소계	327,137,000	493,672,000	517,144,000	542,050,000	569,748,000	2,449,751,000
재원 조달		327,137,000	493,672,000	517,144,000	542,050,000	569,748,000	2,449,751,000
국 비		234,552,000	351,840,000	368,569,000	386,319,000	406,059,000	1,747,339,000
시비	소 계	55,551,000	85,060,000	89,104,000	93,439,000	98,213,000	421,367,000
	일반회계	55,551,000	85,060,000	89,104,000	93,439,000	98,213,000	421,367,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37,034,000	56,772,000	59,471,000	62,292,000	65,476,000	281,045,000
민 간							
기 타							